

韩国实用新型法新旧对比 (2024.2.6 修订版与 2025.1.21 修订版)

실용신안법	실용신안법
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 20200 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	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698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
제 2 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2. (생 략)	1.2. (현행과 같음)
3. “실시”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	3. “실시”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 29 조(침해로 보는 행위)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	제 29 조(침해로 보는 행위)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<신 설>	제 49 조의3(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) 제 11 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p>제 50 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5 조제 1 항, 제 48 조 또는 제 49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 50 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5 조제 1 항, 제 48 조, 제 49 조 또는 제 49 조의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3. 제 49 조의 3의 경우: 1억원 이하의 벌금</p>